**연구개발계약**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본 연구개발계약(“본 계약”)은 [ 년 월 일]("발효일")**부로 [ 국가명 ]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되고 있으며 [ 주소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 회사명 ]("주관기관")과[ 국가명 ]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되고 있으며 [ 주소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 기관명 ]("해외참여기관") 간에 체결되었다.

상기의 주관기관과 해외참여기관 각각은 "당사자"로, 통칭하여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서문**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과제")의 연구 및/또는 개발에 참여하고 [제1기술]에 대한 특정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참여기관은 [제2기술]의 연구 및/또는 개발에 참여하며,

당사자들은 [제1기술]과 [제2기술]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당사자들은 과제에 대한 연구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진흥원")이 국내 수행기관에 제공하며, 과제의 관리·기획·평가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진흥원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며,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중 상대 당사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각자 보유한 선행 지식재산(background IP)에 대한 권리를 서로 허여하고자 하며,

당사자들은 개발 과제를 위해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 의해 개발되거나 획득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을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할당하고 [그들이 과제 수행 중 개발한 기술 및/또는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허락하길] 희망하며,

당사자들은 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 발생 시 이를 진흥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통지대상에는 과제에 투입된 직원, 기술자, 대학원생 및 기타 사무원 등 책임연구원이나 참여연구원("연구원")의 변경, 업무일정과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 수행기관의 장비구입의 변경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변경 발생 즉시 진흥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하에 포함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조건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연구작업**

* 1.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발효일 후 즉시 과제의 수행에 착수한다.
  2. 당사자들은 부록 1(Appendix 1)에 명시된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3.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노력을 사용하여

1. 본 계약과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모든 일정과 이정표를 준수하는 등 연구개발계획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며,
2. 공동연구개발계획 등 본 계약에 따른 상대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와 협력하며 합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상호합의에 의해 달리 연장, 갱신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계약기간**") 유효하다.

**제3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평가**

3.1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해외참여기관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진도보고서, 연차보고서, 수행보고서 등 진흥원의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어떠한 정보 및/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2 해외참여기관은 본 계약의 종료와 과제의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 ]일 전까지 과제에 대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록한 포괄적인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전달한다.

3.3 해외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과제의 매 년도 및/또는 매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진흥원으로부터 과제의 차년도/다음 단계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진흥원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승인")을 득해야 함을 인정한다.

**제4조 지불**

4.1 한국정부는 해외참여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을 지불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주관기관은 진흥원과 협의 하에 필요시 장비 사용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밀유지**

5.1 "기밀정보"란 서면 여부를 불문하고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료, 사양서, 계획, 도면, 원형, 모형, 서류, 기록, 지시서, 매뉴얼, 논문 또는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기타 자료 등 과제와 관련하여 한쪽 당사자(정보제공자)가 상대 당사자(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모든 지식, 노하우, 정보 및/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본 계약에서 기밀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서면으로 그것을 기밀로서 분명히 밝히거나 또는 정보가 구두상으로 또는 다른 어떤 무형의 형태로 공개된 경우, 정보제공자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요약하여 정보공개일로부터 [ ]일 이내에 기밀로서 명시해야 한다.

5.2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기밀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때 합리적인 조치는 적어도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그와 유사한 종류의 기밀정보에 대해 사용하는 조치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는 과제에 필요한 타당한 수의 사본 외에 공개된 기밀정보의 전체나 일부의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

5.3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어떠한 장치나 수단도 사용, 제작 또는 판매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를 어떤 장비나 수단의 설계나 생산의 근거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보유한 기밀정보의 무허가 사용이나 공개를 발견 즉시 이를 그러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4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모든 기밀정보를 기밀로 유지·사용하고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 중 어떤 부분도 (사람, 기업,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든 상관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기밀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정보수령자가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단,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에게 제공한 기밀정보의 일부를 제공하기 전에 그리고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 중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된 제한된 부분만을 공개하는 한,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그러한 절차에 반대하거나 필요한 조치로서 보호명령을 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2. 기밀정보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되거나 일반대중이 입수할 수 있게 된 경우.
3.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그것을 공개할 타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우. 단,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정보제공자에 대해 기밀유지 의무를 갖지 않는 자이다.
4. 정보제공자가 본 계약을 위해 공개한 기밀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수령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에 의해 정보공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정보수령자의 업무기록으로 입증된 경우.
5. 정보제공자에 의한 사전 공개를 제외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경우로, 정보수령자의 업무기록으로 입증된 경우.

5.5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 19.1조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약속한 것과 같은 각각의 기밀유지의무에 의거하여 기밀정보의 내부 공개 대상을 과제를 위해 그러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자들과 인력들로 제한한다.

5.6 본 계약의 해지나 만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기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나 만기일로부터 [ ]년 동안 존속하며 정보수령자, 정보수령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제6조 지식재산권**

6.1 "지식재산"은 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이나 영업기밀에 관한 법에 의한 보호여부를 불문하고 물질, 공정, 제제, 기술정보, 보고서, 사진, 도면, 계획, 사양서, 모형, 원형, 발명품, 패턴, 표본, 소프트웨어 설계 또는 노하우를 포함한다.

6.2 "선행 지식재산”(Background IP)이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본 계약의 계약기간 개시 전에 고안 및/또는 만들어진 모든 지식재산 또는 (상대 당사자로부터 금전, 자료 또는 인적자원 등 어떠한 기여도 없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단독으로 본 계약의 범위 밖에서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모든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6.3 "발생 지식재산”(Foreground IP)이란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과제의 결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6.4 당사자 일방이 (상대 당사자로부터 금전, 자료 또는 인적자원 등 어떠한 기여도 없이) 단독으로 발생시킨 발생 지식재산은 그러한 발생 지식재산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6.5 쌍방이 (금전, 자료 또는 인적자원 등 기여를 하여) 공동으로 발생시킨 발생 지식재산은 주관기관과 해외참여기관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6.6 각 당사자는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자신의 선행 지식재산과 발생 지식재산(중 자신의 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무상 실시권을 허여한다.

6.7 해외참여기관은 발생 지식재산의 상용화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선행 지식재산과 발생 지식재산(중 자신의 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한(제3자에 대한 재실시권을 허락할 권리) 무상 영구 실시권을 주관기관에게 허여한다.

6.8 해외참여기관은 발생 지식재산이 발생하면 즉시 주관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해외참여기관은 선행 지식재산과 발생 지식재산 등 주관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그것의 부주의에 의한 공개나 무허가 사용을 알게 될 경우 주관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공표**

7.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주제내용과 관련된 구두발표와 발췌 등 논문의 공표가 양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단, 그러한 공표는 기밀정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한다.

1. 상대 당사자의 기밀정보나 지식재산은 공표 전에 그러한 모든 출판물에서 삭제한다.
2. 제안된 출판물이나 발표자료를 학술지, 편집장 또는 제3자에게 제출하기 적어도 [ ]일 전까지 그러한 제안된 출판물이나 발표자료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iii) 그러한 공표 전에 상대 당사자로부터 서면허락을 받아야 한다.

7.2 당사자들은 제안된 출판이나 발표가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공개한 기밀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것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대 당사자의 지식재산을 공개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출판이나 발표를 반대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전자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연구자들이 제안된 출판이나 발표로부터 그러한 기밀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후자의 이유로 그러한 반대를 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그러한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한 곳 이상의 특허청에 한 개 이상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신의 연구자들이 그러한 출판이나 발표를 삼가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정보수령자 등 정보를 공개하려는 당사자는 전술한 조치들을 취한 후 7.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안된 출판이나 발표를 할 수 있다.

**제8조 해지**

8.1 만일 주관기관이 3.3조에 의거한 과제의 차년도 및/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승인을 진흥원으로부터 득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각각의 연도 및/또는 단계 말에]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만료된다.

8.2 본 계약은 본 조의 조항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시작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기간 내내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작성하고 서명할 상호 합의할만한 조건 하에서 바라는 만큼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8.3 당사자들 중 일방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 ] 일 이내에 그러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한 당사자는 법적으로 또는 형평법 상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시정조치에 더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취지의 해지통지문을 보냄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지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8.4 당사자들 중 일방이 본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활동을 사실상 중단, 종료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 당사자는 서면통지를 보내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5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사자 일방에 의한 본 계약의 해지는 6조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해지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계약의 해지가 발효된다 해도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5조, 7조, 10조, 11조, 20조 및 21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8.6 본 계약의 해지 즉시 정보수령자는 어떤 식의 사용이든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 사용을 모두 중단한다. 정보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정보수령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의 기밀정보와 그 사본을 모두 즉각 파기 및/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전달하며, 그러한 모든 기밀정보와 그 사본이 모두 파기 및/또는 정보제공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다.

**제9조 진술과 보증**

##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예상되는 조치들을 수행할 전권을 가지며 본 계약의 체결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이행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의무의 위반을 야기하지 않으며,

### 각 당사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합당한 기술과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태도로 본 과제를 수행한다.

##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사용하지만, 주관기관은 그러한 작업이나 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보장도 하지 않으며 오류나 누락이 주관기관의 부주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한, 그러한 오류나 누락에서 기인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 보상**

당사자 일방(**"보상자"**)은 상대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의 임원, 연구자, 직원, 대리인 및 기타 인력("**피보상자**")에게 보상자에 의한 본 계약의 이행, 불이행 또는 위반에서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보상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피보상자가 발생시킨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법률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보상한다**.**

**제11조 권리 불포기**

11.1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명시된 어떤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한 경우라도 그러한 권리의 미(未)행사나 지연은 본 계약에 명시된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방법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11.2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명시나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한 경우, 그러한 권리나 구제방법은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그러한 당사자는 법률 또는 형평법 상의 어떤 추가적인 권리나 구제방법에 의지할 수 있다.

11.3 당사자가 특정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또 다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 다른 구제방법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 법률이나 형평법 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독립계약자**

당사자 양방은 항상 독립당사자이며 본 계약에 담긴 어떠한 조항도 상대 당사자와 대리관계 또는 파트너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

**제13조 양도 및 하도급**

본 계약의 어느 부분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양도되거나 하도급 줄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르지 않는 양도는 어떠한 취지라도 무효이다.

**제14조 변경**

부록을 포함하여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어떠한 구두 합의도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제15조 통지**

본 계약의 당사자들 중 일방이 상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거나 송달하고자 하는 모든 통지나 기타 서류는 오직 인편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모든 우편요금 및 기타 요금을 사전 지불하여 아래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해당 당사자가 이후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지정한 다른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인편으로 송달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낸 통지는 모두 송달과 동시에 전달되었거나 수령한 것으로 본다.

1. 주관기관에게 통지할 경우

이름 :

직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해외참여기관에게 통지할 경우

1. 이름 :

직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제16조 불가항력**

당사자들 중 일방이 전적으로 천재지변, 정부조치, 폭동, 전쟁, 영업장 폐쇄, 운송 사고 또는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을 이유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을 준수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의무를 가능한 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한다.

**제17조 완전 합의**

17.1 본 계약은 본건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 합의이며, 당사자 간의 종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상의 진술, 협상, 확약, 동의, 의사소통, 합의 및 계약을 대체한다.

17.2 본 계약의 부록은 본 계약에 포함된 조항들과 함께 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의 부록 및 조항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부록은 본 계약 자체에 포함된 조항들과 상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상충될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제18조 분리**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 합법성 또는 이행 가능성은 그로 인해 결코 영향을 받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19조 기타**

19.1 당사자들은 또한 본 과제와 관련된 임원, 연구자,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 및 기타 인력에게 본 계약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동의한다.

19.2 본 계약 기간 동안 당사자 중 어느 쪽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제3자와 함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가진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도 체결하지 않는다.

19.3 본 계약의 번역본이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서명된 경우, 이 영문본이 공식적인 것이며 영문본과 번역본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영문본을 따른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분쟁은 수단이나 관할권에 상관없이 영문본으로 해결되고 진행된다.

**제20조 준거법**

본 계약은 모든 면에서 한국법에 준거하며 동법에 따라 해석된다.

**제21조 중재**

본 계약에서 기인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의견 불일치, 논쟁, 배상청구 또는 분쟁은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규칙과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서울에서 3인의 중재인 앞에서 실시된다. 중재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 중재인들이 내리는 모든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 명령 또는 판결의 이행을 위해 해당 관할권의 법원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중재인들의 최종 결정이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관할권의 법원으로부터 사전 금지명령 구제를 청할 수 있다.

이상을 입증하고자, 쌍방의 정식으로 수임 받은 대표자들이 서두에 기재한 일자에 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주관기관

이름 :

직책 :

일자 :

본인은 본 계약서를 숙지하였으며 계약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기로 동의합니다.

서명 :

해외참여기관

이름 :

직책 :

일자 :

본인은 본 계약서를 숙지하였으며 계약조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기로 동의합니다.

서명 :

**첨부**

1. 부록1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

2. 부록2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 영문 요약본

\*\* 유의사항

\* 본 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Party A를 주관기관으로, Party B를 해외참여기관으로 가정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본 계약서 양식은 완성된 계약서가 아니며 본 계약서 양식에 언급된 각 항목은 전체 계약의 구성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각 항목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므로, 전체 계약 작성 시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서 양식의 활용 또는 변경, 개개의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은 구체적인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서 양식은 작성자와 의뢰인 상호 간에 사전 합의된 목적과 용도를 위한 사용 및 사전 합의된 제3자에 대한 제공만이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단 배포 및 내용의 변형은 금지됩니다.

<추가 설명>

\* 본 양식은 한-미 양자R&D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및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으로 구분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국외 기관이 연방R&D기관(예: NIST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공식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